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관광법

주체112(2023)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0호로 채택

### 제 1 장 관광법의 기본

#### 제 1 조 (관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법은 관광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관광업을 활성화하며 사회 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정의)

관광은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일상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체험과 인식, 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행되는 문화정서생활의 한 형태이다.

#### 제 3 조 (관광업발전원칙)

관광업을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면서 국제관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 제 4 조 (관광객보호원칙)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복무하는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인 우리 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이다.

국가는 관광객들의 생명안전과 건강,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한다.

#### 제 5 조 (관광봉사수준제고원칙)

관광봉사수준을 높이는 것은 관광업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관광봉사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관광봉사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도록 한다.

#### 제 6 조 (생태환경보호원칙)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는 것은 관광업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하는 원칙에서 관광을 조직, 진행하며 관광의 전과정에 생태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 **제 7 조 (통일적장악지도원칙)**

관광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것은 관광에서 무질서와 부작용을 미 리막고 관광업을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관광정책의 작성, 시달, 집행, 총화와 같은 관광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도록 한다.

#### **제 8 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관광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 9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령역에서 관광을 하는 공민과 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 우리 나라 려행사와 계약을 맺고 관광업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 관광봉사기업소 (외국투자기업 포함) , 관광사업과 련관된 기관과 공민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관광질서는 특수경제지대와 관련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 10 조 (해당 조약의 적용)**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있는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 2 장 관 광 객**

#### **제 11 조 (인신, 재산, 인권에 대한 보호권리)**

관광객은 관광과정에 생명과 건강, 재산, 인권이 침해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거나 예견되는 경우 구원과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2 조 (관광봉사선택의 권리)**

관광객은 관광봉사를 자원적의사에 따라 선택할수 있으며 강제적인 관광봉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3 조 (계약에 따르는 봉사를 받을 권리)**

관광객은 관광봉사기업소가 계약에 따르는 관광봉사를 제공해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대로 봉사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4조 (손해보상을 요구할 권리)**

관광객은 관광과정에 관광봉사기업소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권익이 침해 당하거나 관광봉사기업소 또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생명, 건강,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관광객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관광객의 상속인은 해당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 15조 (보험에 들 권리)**

관광객은 보험법규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에 들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 16조 (관광객이 지켜야 할 요구)**

관광객은 우리 나라의 법규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공중도덕과 생활풍습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관광자원과 관광대상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비법적으로 동물을 잡고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국가, 군사비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5. 안전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7. 개인건강자료와 신분관계를 여행사에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8. 자의대로 정해진 관광구역을 벗어나거나 관광단체를 리탈하지 말아야 한다.
9. 안전관리와 사고처리, 불가항력적조건에 따르는 관광제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10. 다른 관광객의 관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 여행사의 정당한 요구를 접수하여야 한다.
12. 그밖에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7조 (관광객의 책임)

이 법 제16조의 사항을 어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광객본인이 진다.

## 제 18조 (관광객의 관광중지)

이 법 제16조의 사항을 어겼거나 전염병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광객의 관광을 중지시킬수 있다.

## 제 3 장 관광조직 및 관광계획

### 제 19 조 (관광조직 의 담당자)

관광조직과 관련한 사업은 중앙관광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여행사가 맡아한다.

여행사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광을 조직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 20 조 (중앙관광지 도기 관의 사업내 용)

중앙관광지도기관은 관광조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여행사의 설립승인 및 영업허가
2. 지방인민위원회와 여행사의 관광조직에 대한 장악, 지도
3. 관광조직과 관련하여 국제 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사업연계
4. 그밖에 관광조직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처리

### 제 21조 (지 방인민위 원회 의 사업내 용)

지방인민위원회는 관광조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산하여행사의 관광조직에 대한 장악, 지도
2. 관광조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지방정부들과의 사업연계
3. 그밖에 관광조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처리

### 제 22조 (려 행사의 구분)

여행사는 국내 관광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와 입국관광 및 출국관광조직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여행사로 구분한다.

국제여행사는 국내관광도 조직할수 있다.

### **제 23조 (여행사의 설립승인)**

여행사를 내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관광지도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사의 설립승인과 관련한 질서는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정한다.

### **제 24조 (여행사의 영업허가)**

설립승인을 받은 여행사는 해당한 영업준비를 갖춘 다음 중앙관광지도기관에 영업허가신청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도기관은 여행사의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 **제 25조 (영업허가증의 유효기간연장 및 재발급)**

여행사는 영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영업허가증이 분실, 오손, 소각되었거나 영업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 **제 26조 (여행사의 사업 내용)**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입출국 및 여행수속
2. 다른 여행사와의 교섭 및 관광계약체결
3. 관광일정의 작성 및 집행, 관광객의 접수 및 안내봉사
4. 관광객의 인신, 재산의 보호
5. 그밖에 관광조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업

### **제 27조 (관광조직에서 지켜야 할 요구)**

관광조직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2. 관광대상과 관광로정, 관광일정, 관광봉사에 대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개선

전하여야 한다.

3. 관광로정과 관광일정, 관광안내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4. 관광이 승인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참관이나 관광과 관련이 없는 일정을 조직하지 말아야 한다.
5. 관광봉사기업소와 계약을 맺고 관광봉사날자와 시간, 인원수, 봉사내용 같은것을 정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6.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우며 발생한 사고를 정해진 절차대로 대책하여야 한다.
7. 관광객이 국가의 법규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제 28 조 (관광계획의 분류)**

관광계획에는 관광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이, 관광전망계획에는 국가관광전망계획과 지역관광전망계획이 속한다.

국가관광전망계획은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지역관광전망계획은 해당지방인민위원회가 세운다.

현행계획은 여행사가 세운다.

#### **제 29 조 (관광전망계획의 작성, 집행)**

중앙관광지도기관은 국가관광전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내며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에 국가관광전망계획을 반영하여 집행시켜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관광전망계획을 지방경제발전전망계획에 반영하여 집행시킨다.

관광전망계획에는 관광발전목표와 단계별계획, 그 수행방도 같은것이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국토계획과 도시계획, 환경보호계획 등과 맞물려져야 한다.

#### **제 30 조 (현행계획의 작성, 시달)**

여행사는 관광객원천과 접수능력을 정확히 타산한데 따라 현행계획을 작성하여 정해진기간안에 중앙관광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관광지도기관은 여행사가 제출한 현행계획을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달

하여야 한다.

### **제 3 1 조 (관광계 획수행)**

중앙관광지도기 관과 지 방인민위 원회, 련 행사는 관광계 획 수행을 위 한 작전과 지 휘를 바 로하 여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 4 장 관광 선전**

### **제 3 2 조 (관광선전계획의 작성 및 집행)**

중앙관광지도기 관은 국가적 인 관광선전계 획을 세우고 관광선전사업 을 통일적 으로 장악, 지 휘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선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관광지도기관에 집중시켜야 한다.

지방인민위 원회는 중앙관광지도기 관의 지도밑 에 지 역적 인 관광선전계 획을 세우고 집 행 하여 야 한다.

### **제 3 3 조 (관광선전당사자)**

관광선전은 중앙관광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련행사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 아 한다.

관광업과 련관된 부문에 종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도 정해 진데 따라 관광 선전을 할수 있 다.

### **제 3 4 조 (관광선전방법)**

중앙관광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련행사,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신문, 방송, 정 보통 신문에 의한 소개, 관광선전물의 보급, 관광봉사를 통한 선전 등 관광선전을 여 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관광대상, 관광로정, 관광일정을 널리 소개, 선전하여야 한다.

관광선전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데 따른다.

### **제 3 5 조 (관광선전물의 발행, 제작)**

관광선전물의 발행, 제작은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관광선전물의 발행,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서는 해당 출판법규에 따른다.

### **제 3 6 조 (관광선전에서의 금지사항)**

관광선전에서 금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내용
2.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내용
3.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
4.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헐뜯거나 그 권익을 침해할수 있는 내용
5.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
6. 그밖에 국가의 법규에 저촉되는 내용

## 제 5 장 관 광 봉 사

### 제 37 조 (관광봉사의 담당자)

여행 및 안내봉사는 여행사가 진행하며 그밖의 관광봉사는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정해진 업종의 관광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관광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8 조 (관광봉사에서 지켜야 할 요구)

관광봉사기업소는 관광봉사에서 다음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국가의 법규의 요구대로 관광봉사를 하여야 한다.
2. 관광객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3. 관광객의 신앙과 풍습을 존중하며 개인적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4. 봉사성을 높이고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5. 통신시설, 편의시설 같은것을 규정대로 갖추어야 한다.
6. 계약상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봉사수용능력과 제정된 봉사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8. 관광객을 차별하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부당리득을 얻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39 조 (여행 및 안내봉사)

여행사는 관광일정대로 여행 및 안내봉사를 진행하며 관광안내성원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관광안내성원으로는 해당 관광안내원자격을 받은 성원만이 될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광안내원자격이 없으나 관광안내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원을 보조안내성원으로 인입할수 있다.

관광안내 성원의 안내봉사활동과 관련한 질서는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 **제 40 조 (숙박봉사)**

관광객에 대한 숙박봉사는 해당 영업 허가를 받은 관광봉사기업소가 한다.

관광객 숙박봉사를 하는 관광봉사기업소는 관광객이 숙박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관광객숙박봉사를 하는 관광봉사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중앙관광지도기관으로부터 급수를 사정받아야 한다.

#### **제 41 조 (급양봉사)**

관광객에 대한 급양봉사는 해당 영업 허가를 받은 관광봉사기업소가 한다.

급양봉사를 하는 관광봉사기업소는 우리나라 민족료리와 지방별특산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난 요리들도 봉사할수 있다.

#### **제 42 조 (운수봉사)**

관광운수봉사는 항공운수봉사, 철도 운수 봉사, 자동차운수봉사, 수상운수봉사 등으로 구분한다.

항공운수봉사, 철도운수봉사, 자동차운수봉사, 수상운수봉사는 해당 운수기관, 기업소가 한다.

#### **제 43 조 (참관봉사)**

참관봉사를 진행하는 관광봉사기업소는 참관시설과 안전보장시설, 해설자료, 위생문화적인 봉사조건과 환경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고 관광객이 참관대상에 대하여 원만히 인식할수 있게 참관로정에 따르는 해설을 잘하여야 한다.

관광지를 관리 운영하는 관광봉사기업소는 중앙관광지도기관 또는 지방인민 위원회로부터 관광지등급평가기준에 따르는 급수를 사정받아야 한다.

#### **제44조 (편의 및 체육문화오락봉사)**

관광객에 대한 편의 및 체육문화오락봉사는 해당 영업허가를 받은 관광봉사 기업소가 한다.

편의 및 체육문화오락봉사를 하는 관광봉사기업소는 승인된 업종밖의 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45조 (기념품판매봉사)**

관광객에 대한 기념품판매봉사는 해당 영업허가를 받은 관광봉사기업소가 한다.

기념품판매 봉사를 하는 관광봉사기업소는 품질과 위생안전성이 담보되고 승인된 지표의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 **제46조 (치료관광봉사)**

관광객에 대한 치료관광봉사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건기관만이 할수 있다.

관광객에 대한 치료관광봉사를 하는 보건기관은 봉사장소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의료봉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장 관광안전**

#### **제47조 (관광안전보장에서 지켜야 할 요구)**

관광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관광객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관광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관광봉사기업소는 관광안전관리체계와 안전교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해당 법규를 준수하여 관광안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48조 (여행사의 안전관리사업내용)**

여행사는 관광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광과정에 지켜야 할 안전사항을 관광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관광안전에 저해를 주는 관광객의 행위를 저지시켜야 한다.
3. 관광안전에 저해를 줄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관광봉사기업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년로자, 장애인, 아동들의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제49조 (재해방지체계수립)**

지방인민위원회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재해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운영하며 비상재해물자를 조성, 동원하여 각종 재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조성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시급히 관광객을 협조하여 재해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 50조 (관광지에서의 안전성보장)**

관광지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안전보장을 위한 시설물을 법적요구와 기준대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 51조 (위생 안전성보장)**

급양봉사기업소는 관광객에게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음식물을 봉사하여야 한다.

#### **제 52조 (운행 안전성보장)**

관광운수봉사기업소는 운수수단의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운행규정을 엄격히 지켜 관광객의 운행안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 53조 (치료조건보장)**

보건기관은 의료설비와 약품 같은것을 원만히 갖추며 의료봉사의 질을 높여 관광과정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관광객을 성의껏 치료하여야 한다.

### **제 7 장 관광개발**

#### **제 54조 (관광개발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중앙관광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개발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관광개발에는 관광지 개발, 관광자원개발, 관광시장개발, 관광로정 개발, 관광일정 개발 등이 속한다.

#### **제 55조 (관광지개발의 당사자)**

관광지개발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필요에 따라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도 관광지개발에 투자할수 있다.

#### **제 56조 (관광지개발에서 지켜야 할 요구)**

관광지개발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문화적재부가 있거나 자연풍치가 좋은 곳에 해당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관광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관광지에 관광객수요에 따르는 숙박시설, 상업, 급양, 편의봉사시설, 위생시설 같은것을 꾸려야 한다.
3. 관광지개발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구성과 교통조건 같은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관광지개발과정에 역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자연풍치 같은것을 파괴, 손상 시 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관광지개발과정 에 관광지와 그 주변의 생 태환경을 철저 히 보호하여 야 한다.
6. 그밖에 국가의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 57 조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중앙관광지도기관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중앙관광지 도기 관에 등록하여 야 한다.

#### **제 58 조 (관광시장개발)**

관광시 장개 발은 지 방인민위 원회 와 려 행 사가 한다.

관광시장개발에는 시장조사, 목표시장선택, 대방려 행사선택, 관광객원천확보, 관광지에 대한 선전, 관광실현을 위한 자료제공 같은 사업이 속한다.

관광시장을 개발하는 려행사는 다른 려행사가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관광시 장 에 손해를 줄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59조 (관광로정 및 일정개발)**

관광로정 및 일정의 개발은 려행사가 한다.

려 행사는 관광로정과 일정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개 발하며 개 발된 관광로정과 일정을 정 해 진데 따라 중앙관광지 도기 관과 지 방인민위 원회 에 등록하고 리 용하여 야 한다.

#### **제 60 조 (관광개발기금의 조성, 리 용)**

지방인민위원회는 관광개발에 필요한 기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할수 있다.

### **제 8 장 관광사업의 과학적발전**

### **제 6 1 조 (관광사업의 과학적발전에서 지켜야 할 요구)**

중앙관광지도 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 관, 중앙교육지도 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계적인 관광발전추세에 맞게 관광부문의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관광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관광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 **제 6 2 조 (관광부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중앙관광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광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관광부문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를 정확히 세운데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연구, 개발하여 우리 나라 관광발전의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 **제 6 3 조 (관광사업의 정보화)**

중앙관광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정보자료를 적극 수집, 보급하며 관광사업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 **제 6 4 조 (관광일군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관광지도기관, 해당 교육기관은 우리 나라 관광발전의 요구와 세계적인 관광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관광일군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관광교육의 구조, 내용과 방법,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유능한 관광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야 한다.

### **제 6 5 조 (관광교육사업에 대한 후원)**

중앙관광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일군 양성기관들을 적극 후원하여야 한다.

### **제 6 6 조 (관광사업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조건보장)**

중앙계획지도 기관과 중앙재정지도 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 관, 지방인민 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부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과 관광교육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계획에 맞물려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 9 장 관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 6 7 조 (관광사업에 대한 지도)**

관광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관광지도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은 중앙관광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해당 지역의 관광

사업을 장악, 지도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중앙관광지도기관, 지방인민 위원회,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 **제 68조 (비상설관광기구의 조직, 운영)**

관광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하여 협의, 대책하기 위하여 중앙에 비상설국가관광 위원회를, 도(직할시)에 비상설지역관광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국가관광위원회와 비상설지역관광위원회에서 조직하고 포치한 문제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그 정형을 제때에 내야 한다.

#### **제 69조 (관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관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관광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관광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광법규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 70조 (민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관광객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위약금, 연체료의 부과,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 7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1. 관광객이 관광과정에 법적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만~10만원
2. 비법적으로 관광객모집, 여행 및 안내봉사를 하였을 경우 해당 수입액의 2배
3. 여행사가 영업허가증을 분실, 오손, 소각시켰을 경우 50만원
4. 관광조직과 관광봉사를 관광계약, 관광봉사기준과 어긋나게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5. 비법적으로 관광선전물을 발행, 제작, 보급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3만~10만원
6. 금지된 내용으로 관광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7. 관광봉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관광안전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 손해 액의 3배
8. 관광지개발과 운영과정에 역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자연풍치 같은것을 파손시켰거나 생태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
9. 관광시장개발에서 법적요구를 지키지 않아 다른 여행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손해액의 2배
10. 여행사가 관광로정과 일정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00만원

### **제 72 조 (중지 처 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폐업시킨다.

1. 관광조직과 관광봉사를 관광계약, 관광봉사기준과 어긋나게 하였을 경우
2. 금지된 내용으로 관광선전을 하였을 경우
3. 봉사조건과 환경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하였거나 승인된 업종밖의 봉사를 하였을 경우
5. 관광안전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을 경우
6. 관광지개발과 운영과정에 역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자연풍치 같은것을 파손시켰거나 생태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7. 관광로정과 일정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8. 여행사설립승인, 영업허가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동안 관광조직실적이 없거나 기준에도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9. 관광정책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지도통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 **제 73 조 (몰수)**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 **제 74 조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 벌)**

관광안내봉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봉사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관광안내 성원에게는 엄중성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 **제 75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비법적으로 관광객모집, 여행 및 안내봉사를 하였을 경우
2. 관광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관광계획을 바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4. 비법적으로 관광선전물을 발행, 제작, 보급하였거나 금지된 내용으로 관광선전을 하였을 경우
5.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하였거나 승인된 업종밖의 봉사를 하였을 경우
6. 관광봉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관광안전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7. 관광객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8. 관광지개발과 운영, 관광과정에 역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자연풍치 같은것을 파손시켰거나 생태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9. 관광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위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저애를 주었을 경우
10. 관광정책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지도통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혔거나 2만원분정도 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 7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제 77조 (신소와 그 처리)**

관광객은 중앙관광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 78조 (분쟁 해결)**

관광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